

14. 아파트 廣告 實態調查

資料提供：消費者保護院

〈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안정과 주택보급율의 향상 등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생겨나고 있어, 각 업체에서는 자사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해 용자내역, 교통·거리, 분양면적, 주택의 특징, 주택환경·생활여건 등에 대해 일부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에 아파트 광고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2. 조사대상

- 서울 등 주요 5대 도시의 일간지에 실린 아파트 분양광고 57종

조사지역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대상신문	조선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조사대상수	'94. 1 10	5	5	4	3
	'96. 4 10	5	5	5	5

※조사대상신문은 지역별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문을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광고는 조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94. 1월분 광고 27종과 '96. 4월분 광고 30종을 표본추출함.

3. 조사내용

- 아파트 분양광고 내용의 허위·과장성 여부
 - 용자내역, 교통·거리, 주택환경·생활여건, 분양면적 등
- 당원 피해구제 사례분석

4. 조사방법

- 서울 등 5대 도시의 아파트 광고 중 57종('94. 1월 광고 27종, '96. 4월 광고 30종)을 표본추출하여 관련법규조사, 현장방문 및 사업자 등에 사실 확인

〈Ⅱ. 아파트 관련 법규〉

1. 광고관련 법규

- 현재 아파트 광고와 관련된 법규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와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이 있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 이 기준은 주택광고에 대한 허위·과장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면적, 교통·거리, 용자금 및 전세금, 주택의 특징,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2. 주택관련 법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시 사업주체명, 소재지, 면적, 용자지원 내용 등을 공고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후에

실시하는 아파트 광고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 즉 사업주체명, 소재지, 면적, 용자지원내용, 입주예정일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⑤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및 건축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된 최소한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⑥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 주택이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Ⅲ. 조사결과〉

1. 용자금에 대한 광고실태

○ 조사대상 광고 30건 중 용자광고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당연히 용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을 마치 특별용자인 것처럼 광고

- 조사대상 광고중 국민주택기금을 용자받아 건설하는 아파트의 용자광고는 13건으로서 이 중 법규대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용자임을 표시한 광고는 6건이었으며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용자임을 표시하지 않은 7건의 광고에서는 마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직접 알선, 용자해 주는 것처럼 ‘특급용자’, ‘용자특별’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음.

국민주택기금 미표시 광고

주 택 명	광 고 내 용	비 고
시흥 매화동 조영그린㉠	용자금액 24평형, 32,000천원, 주택·일반은행 알선	국민주택기금이 라는 용어만 사 용해도 제대로 광고가 된 것으 로 봄.
안산 거모지구 유호㉠	용자안내 24평형, 주택은행 1,200만원(20년)	
인천 마전 현대㉠	22평형, 2,000만원(1,200만원 잔금+800만원 중도 금 용자)	
청평 청구㉠	용자내역 주택은행(23평형), 대출금액 1,200만원, 대출금리 11.5%, 대출기간 20년(1년 거치 19년 상환)	
동래 벽산㉠	중도금 5회에서 잔금 일부까지 주택은행 특별용 자 3,000만원	
복현동 건영㉠	특급용자: 주택할부금융 및 시중은행 장기저리용 자 대폭지원 예정	
경성공원㉠	용자특보 23평형, 주택은행 1,200만원	

※국민주택기금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용자하여 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완공후 입주자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특별기금으로서 한국주택은행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나. 대출금융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액의 용자금 등에 대한 표시

—용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광고에서 용자금액이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으나 용자광고를 한 22개 업체중 5개 업체에서는 금융기관과 용자금 등에 대한 사전 약정이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자금액이 확정적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음.

대출약정 미체결 현황

주 택 명	대출약정에 대한 체결 현황	비 고
청평 한일㉠	협의중	'96. 6. 10일 현재
대구 복현동 서한㉠	협의중	
경산 삼주㉠	미체결	
광주 비아동 미라보㉠	협의중	
광주 첨단지구 건영㉠	협의중	

다. 대출 이자율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을때 각종 금융기관으로 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융자받고 있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율이 대출신청의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아주 미흡한 상태임.

- 이자율 표시의 경우 융자광고를 한 22개 업체중 단 4개 업체(총 융자금 중 일부 회사무이자 융자금을 표시한 2개 업체도 포함)만이 이자율을 표시함.

라. 배타적인 표현 사용

- 22건의 융자광고 중 융자금액, 융자조건 및 이자율 등에서 타 업체의 융자광고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건의 광고에서 “파격적인 융자”, “특급융자” 등을 운운하며 부당하게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음.

배타적 표현 사용 광고

주 택 명	광 고 내 용	비 고
시화 신도시 진로㉠	파격융자 알선으로 내집마련을 앞당기십시오	
복현동 서한㉠	파격적인 20년 장기 무보증 특급융자	
복현동 건영㉠	특급융자 : ...장기저리융자 대폭지원 예정	
광주 비아동 미라보㉠	파격적인 융자	
광주 첨단지구 건영㉠	파격적인 융자 혜택	
대전 경성공원㉠	융자특보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3-1> 용자금에 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초과된 금액을 표기하거나 용자금액 및 조건과 용자기관 등을 명백히 하지 않아 실제보다 유리하다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2. 교통·거리에 대한 광고 실태

○ 총 조사대상 광고 57건 중 교통·거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 교통·거리에 대한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의 불명확한 표시

- 교통·거리에 대해 표시된 27건의 광고 중 13건의 광고에서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까지 ○○분”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 아파트의 위치가 실제보다 근거리에 위치한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준지점 및 교통수단에 대한 불명확한 광고

주 택 명	광 고 내 용	비 고
시흥 대화동 조영그린 [㉠]	서울, 인천, 수원 20분거리	교통수단 및 기준 지점 불명확
수원 LG빌리지	수원역 10분대, 안양·과천 15분대, 사당 전철역·예술의 전당 25분대	”
대구 이스트타운	...동부정류장 5분 거리, 시내중심가 10분 대 진입	”
광주 화순광덕지구 금호타운	광주도심까지 20분이면 충분한 거리	”
대천 동부 [㉠]	대천시내와 5분 거리	”
수원 금곡2차 삼익 [㉠]	시내까지 15분 거리	”
인천 연수·선학 운성 [㉠]	...등 모든 시설이 5분 거리	”

주 택 명	광 고 내 용	비 고
수원 벽산 늘푸른㉠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과천-의왕고속도로 10분내 진입	교통수단 불명확
광주 상무4단지 금호타운	고속터미널, 광주역, 광주공항 10분 거리	"
광주 비아동 미라보㉠	운암동 10분 거리	"
고양 행신·능곡 무궁화㉠	서울시청까지 30분	"
고양 중산 두산㉠	일산에서 지축역까지 10분 이내	"
대구 다산 금류강남타운	5분 거리의 지하철, 금류강남타운에서 상인까지 3분, 서부정류장 10분, 영대R 15분, 반월당 20분	"

나. 소요시간 및 거리의 과장 표시

-소요시간 및 거리를 표시한 27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실제 소요시간과 거리를 측정 한 결과 7건의 광고가 사실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소요시간 및 거리에 대한 광고 실태

주 택 명	광 고 내 용	실제 소요시간(승용차)
시흥 매화동 조영그린㉠	서울, 인천, 수원 20분 거리	각 시청을 기준으로 30~1시간 정도 소요
수원 LG빌리지	수원역 10분대, 안양·과천 15분대, 사당전철역·예술의 전당 25분대	수원 15분, 안양·과천 30분대, 사당전철역·예술의 전당 50분
상무4단지 금호타운	고속터미널, 광주역, 광주공항 10분 거리	광주역 20분 소요
고양 행신·능곡 무궁화㉠	서울시청까지 30분	50분 정도 소요
고양 중산 두산㉠	서울에서 21km거리, 승용차로 40~50분 소요	서울시청에서 28km거리, 60~70분 정도 소요
고양 중산 코오롱㉠	서울시청 21km, 일산 지축역지하철과 복선전철 일산역이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환경	서울시청 28km, 지하철까지 승용차로 최소 10분이상 소요
대구 다산 금류강남타운	5분 거리의 지하철, 금류강남타운에서 상인까지 3분, 서부정류장 10분, 영대R 15분, 반월당 20분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까지 승용차로 10분정도 소요, 반월당까지는 50분정도 소요

- 위와 같이 LG벨리지나 다산 금류강남타운처럼 도로나 지하철이 건설중인 경우 완공후를 예측하여 소요시간을 공고하고 있으나 공사완공후 여러가지 교통요인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아니라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에도 전철·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현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거리는 지도상의 직경거리가 아니고, 통상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준지점이나 교통수단이 명백치 않을 경우는 통상적인 관념에 의해 판단

<2-1, 2, 3> : 주택의 소재지에 대하여 기준지점이 명확치 않아 실제보다 근거리에 위치한다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 위 주택의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표기할 경우 구체적인 교통수단이 명확치 않아 실제보다 근거리에 위치한다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 및 위 교통수단에 의한 소요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간대의 정상속도가 아닌 새벽이나 한밤중의 속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보다 근거리에 위치한다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3. 면적에 대한 광고 실태

○ 전체 조사대상광고 57건 중 55건의 광고에서 면적에 대한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 구포동 태평양아파트의 경우 관련 법규상에는 공용면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차장면적을 포함하여 공급면적 “○○평형”이라고 광고하였으며, 대전 초정 보명아카시아 임대타운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평형표기를 제대로 하였으나 분양광고에서는 실제 공급면적보다 0.44평 정도 크게 표시하여 광고한 사례가 있음.

구포동 태평양아파트의 면적관련 광고 사례

(단위 : m²)

평형	전용	공유	법정초과지하층	계약면적(평)	비 고
36	83.63	37.45	15.17	36.626	
27	58.80	30.43	10.67	26.994	

※공유면적에 주차장면적 포함.

「주택광고에 관한 심사기준」: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공급면적”을 표시할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계 이하로 함.

〈1-2〉: 주택면적에 대하여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외에 발코니, 베란다, 주차장 등 서비스면적까지 포함하여 “총면적” 또는 “평형”으로 표현하여 실제보다 넓다고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과장광고에 해당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4.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에 대한 광고 실태

- 전체 조사대상 광고 57건 중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을 조사한 결과
 -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해 광고한 24건의 광고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5건의 광고에서 표시된 내용과 실제 현장과는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이 발견됨.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에 대한 과장 광고

주 택 명	광 고 내 용	실제 확인결과
부산 다대 대우 [㉠]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최 고의 전망권	5개동 중 2개동과 1개동 일부가 앞동 에 가려 바다가 보이지 않음.
대구 이스트타운	풍부한 녹지와 맑고 깨끗한 공기의 일급주거지	단지주변은 녹지가 거의 없는 주택지 이며, 공기도 차가 봄비는 도로변이 어서 맑고 깨끗하지는 않음.
대구 북현동 건영 [㉠]	맑은 공기, 쾌적한 전망의 팔공산이 바로 인접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으로 공기는 맑 지 않고, 팔공산도 앞에 다른 아파트 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음.
대천 동부 [㉠]	남향배치 구조와 바다가 보 이는 전망	일부 세대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 음.
청주 사천2차 동아 [㉠]	유서깊은 무심천과 우암산 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단지와 우암산은 상당한 거리 가 떨어져 있음.

5. 기타 아파트 관련 광고 실태

가. 주택의 특징에 대한 광고

- 조사대상 광고 27건 중 주택의 특징에 대해 표시한 광고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대다수의 업체에서는 광고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주)송광건설의 송광파크맨션의 경우 광고상으로는 다용도 수납 붙박이장을 20·24평형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4평형에만 설치 되었음.

나. 절대적·배타적 표현에 대한 광고

- 전체 조사대상 광고 57건 중 17건의 광고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위치, 품질, 교통, 환경 등에 대해 배타적·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배타적·절대적 표현사용 광고 현황

주 택 명	광 고 내 용
시화 신도시 진로㉠ 수원 LG빌리지 부산 해운대 대원㉠ 해운대2차 대우㉠	최고급 마감자재를 적용한 고품질의 진로㉠ 환상적인 특급단지 마지막 남은 최고의 요지 2년 후면 해운대가 특급주거지역, 해운대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구포 삼성그린코아 대구북현2차서한타운 상무4단지 금호타운 광주 첨단 건영㉠ 화순 광덕 금호타운 대전 동부㉠	최상의 주거지역 한차원 앞선 설계와 자재를 선보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광주의 중심으로 탄생합니다. 광주 최고수준의 고품격㉠을 내집으로 마련할 절호의 기회 화순 최초의 대규모 최고급㉠ 최고급 마감재
대전 경성공원㉠ 고양 행신·능곡 무궁화㉠ 신반포 잠원 화신 조합㉠ 산성 한강㉠	파격적인 분양가 통일한국교통의 중심지, 서울과 제일 가까운 곳 가장 저가의 분양가로 주택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서울도심에서 손꼽히는 몇 안되는 최적의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특급 주거지역 입니다. 비교가 안되는 자재의 최고급화
해운대 영남㉠ 대구팔공2차귀빈타운 대구다산금류강남타운	대구 최적의 전원주택 자재는 60평형 수준, 서부권 최고의 녹색환경에 위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IV.15.나 :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다만, 객관성이 있고 본인이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6. 피해구제 사례분석

- '95년 1년간 당원에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해구제가 청구된 총 건수는 153건이며, 이 중 광고와 관련된 건은 10여건 임.

아파트관련 피해구제 건수

년 도 별	93	94	95	96.6 현재
피해구제 건수	135	213	153	87

-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1)
 '93년 3월 박모씨가 D업체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 팜플렛에 기재된 선택사양품목중 안방목창호가 완자형으로 되어 있었으나 일반형으로 시공되어 있음.

- 이에 당원에서 사업자에게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약속이행을 권고한바 사업자는 청구인의 요구에 따름.

(사례 2)
 '94년 5월 김모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후 거실유리를 보니 계약당시의 카다로그에 표시되어 있는 16mm페어유리가 아닌 3mm, 2.2mm의 무늬유리로 시공되어 있어 계약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함.

- 이에 당원에서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설계도면에는 16~20층의 고층유리가 5mm로 되

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3mm로 되어 있어 당초 설계대로 재시공을 권고하니 시공회사에서 교체시공함.

(사례 3)

'94년 6월 김모씨가 D기업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한 후 별도계약품목(홀오토, 살균싱크대)이 광고와 상이하여 보상을 요구함.

○ 위 사례는 당원에 '96. 6. 7일에 접수된 건으로 현재 사실조사중 임.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사업자의 정확한 정보제공 요망

- 이번 조사대상 광고중 주택면적이나 주택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대체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 용자내역, 교통·거리, 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소비자오인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업자가 용자내역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
 - ① 국민주택기금 용자대상 아파트는 반드시 그 사실을 표시토록 하고
 - ② 대출금융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실을 명시토록 하고
 - ③ 융자금의 경우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등의 사항을 표시토록 해야 함.
 - 교통·거리, 환경 및 생활여건 등에 대해 광고를 할 때도 관련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소비자오인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야 함.

2. 관련기관의 관심 촉구

- 현재 부동산경기의 안정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를 빌미로 허위·과장 광고가 용인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 용자내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율 등의 미표시
- 교통·거리의 경우 교통수단 미표시, 소요시간 등의 과장
- 환경 및 생활여건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기타 절대적·배타적인 표현사례 다수 등으로 나타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사업자계도가 요망됨.

3. 소비자 주의 필요

-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파트 광고와 관련해서 소비자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광고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직접 현장확인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
 - 용자와 관련해서는 대출이자율 및 대출과 관련된 기타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 교통·거리의 경우는 소비자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의 교통여건, 출·퇴근시 소요되는 시간을 점검해 보고
 - 환경 및 생활여건도 아파트 준공후의 경우를 고려해서 주변 경관이나 전망 등을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할 것이며
 - 특히 배타적·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사실입증이 곤란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많으므로 주의해서 자신의 아파트를 선택토록 해야 할 것임.

〈V. 조치계획〉

1. 관계기관 통보 및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 촉구

2. 소비자 홍보

부동산광고 업체 목록

매 체 명	주 택 명	업 체 명	일 · 면
조선일보 (’94. 1월)	수원 금곡2차 삼익아파트	(주)삼익	6, 5
	고양 행신·능곡 무궁화아파트		6, 17
	인천 연수·선학 윤성아파트	윤성건설(주)	14, 5
	의정부3동 신도3차아파트	(주)신도종합건설	14, 7
	고양 중산 두산아파트	두산건설(주)	17, 25
	고양 중산 코오롱아파트	코오롱건설(주)	18, 21
	성내동 청구아파트	성내청구연합주택조합	24, 24
	신반포잠원 화신조합아파트	잠원지구연합주택조합	27, 3
	성북길음 현대아파트	길음현대주택조합	29, 8
	삼성 한강아파트	토정동 연합주택조합	31, 31
부산일보 (’94. 1월)	장림 도원타워맨션	(주)남양주택	1, 33
	구포동 태평양아파트	태평양개발(주)등	6, 5
	해운대 영남아파트	영남건설(주)	12, 9
	해운대 선경·경남아파트	선경건설, 경남기업	19, 16
	해운대 동부아파트	동부건설(주)	29, 16
매일신문 (’94. 1월)	안심 효성타운	효성그룹 (주)동성	1, 29
	팔공2차 보성타운	(주)보성주택	12, 31
	우리배2차 귀빈타운	(주)태왕주택	24, 27
	우방푸른타운	’74시영동신(주)재건축조합	26, 1
	다산 금류강남타운	금류건설	28, 28
광주일보 (’94. 1월)	송광파크맨션	(주)송광건설	1, 28
	송하동 금호타운	신화건설(주)	6, 23
	진월2차 삼익아파트	(주)삼익	7, 1
	백운동 예림빌라트	(주)예림건설	29, 23
대전일보 (’94. 1월)	공원맨션타운	(자)풍산건설, (주)한양건설	8, 6
	청주 사천2차 동아아파트	동아건설산업(주)	17, 21
	둔산 강변아파트	동아건설(주), 계룡건설(주)	18, 24

매체명	주택명	업체명	일·면
조선일보 (’96. 4월)	수락산 삼익아파트	(주)삼익	1, 39
	안양 기산아파트	안양기산연합주택조합	9, 3
	시흥 매호 동 조영그린아파트	조영종합건설(주)	12, 6
	안산 유호아파트	유호건설(주)	17, 2
	인천 마전 현대아파트	현대산업개발	19, 6
	청평 청구아파트	(주)한일건설	20, 25
	시화 진로아파트	진로건설	24, 6
	수원 벽산 늘푸른아파트	(주)늘푸른주택	25, 4
	한스타워	한일합섬건설	26, 3
수원 LG빌리지	LG건설	27, 40	
부산일보 (’96. 4월)	부산 다대 대우아파트	대우건설	1, 1
	해운대 대원아파트	(주)대원	3, 1
	해운대2차 대우아파트	대우건설	11, 26
	동래 벽산아파트	벽산건설	15, 5
	구포 삼정그린코아	삼정종합토건(주)	22, 32
매일신문 (’96. 4월)	북현2차 서한타운	서한	1, 32
	이스트타운	진로건설	15, 16/7
	경산4차 삼주봉황타운	삼주건설(주)	17, 48
	수성하이츠	쌍용건설(주), 화성산업(주)	25, 32
	북현동 건영아파트	(주)건영산업개발	30, 32
광주일보 (’96. 4월)	비아동 미라보아파트	(주)미라보건설	2, 1
	상무4단지 금호타운	군인공제회	16, 28
	광주첨단지구 건영아파트	(주)건영	23, 1
	화순 광덕지구 금호타운	금호건설	26, 1
	첨단 우미아파트	우미산업개발	27, 1
대전일보 (’96. 4월)	아산 신라임대아파트	(주)신라·신라개발	1, 1
	아산탕정 삼일임대아파트	삼일주택공사	1, 27
	초정보명 아카시아임대타운	(주)보명주택	15, 2
	대천 동부아파트	동부건설(주)	24, 1
	경성공원아파트	(주)경성건설	29, 1

주택회보